

발 간 등 록 번 호

11-1710000-000066-14

연구비 사용,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상담 및 부당집행 사례중심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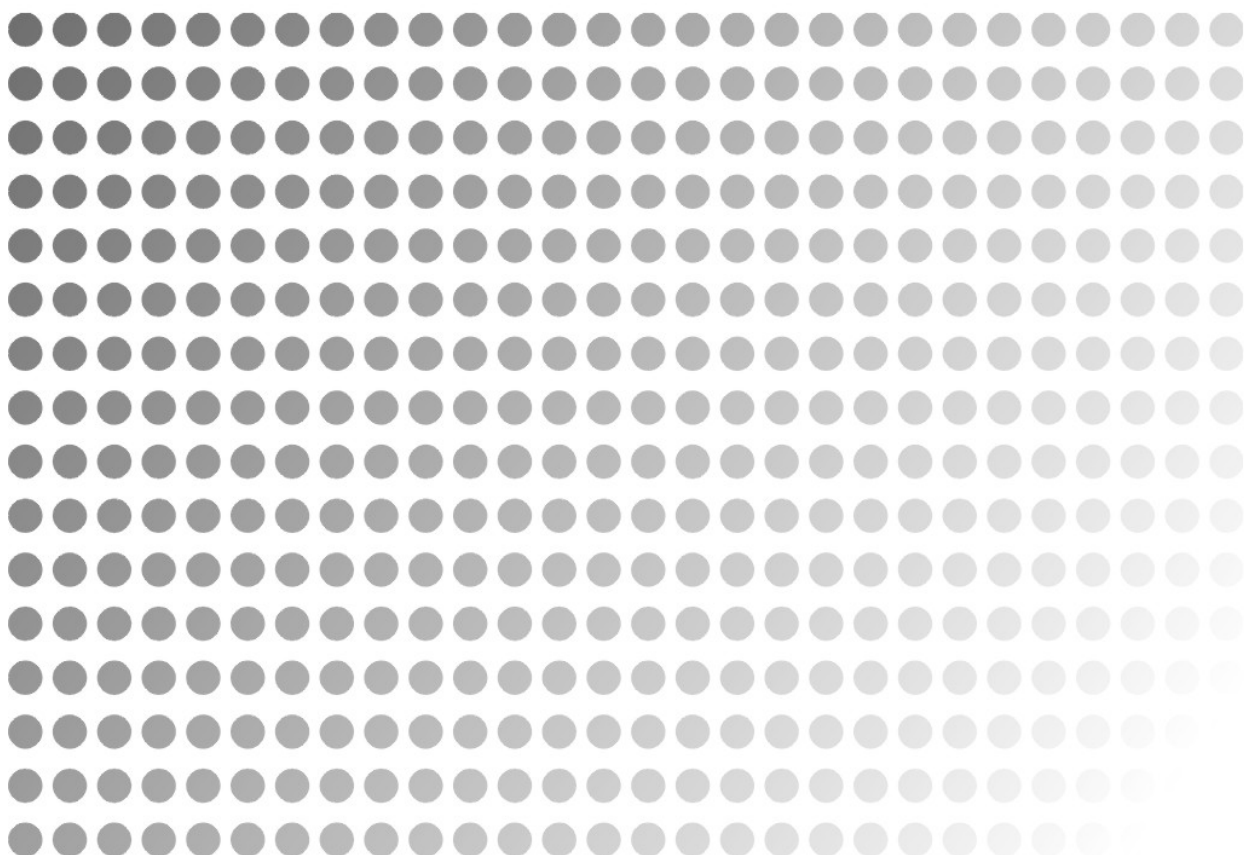
제1장 연구개발비 일반현황	1
1. 연구개발비 현황	3
2. 연구개발비 관련 법령 및 규정 현황	4
3.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절차	6
(1) 연구비 관리 절차 개요	6
(2) 연구비 지급	6
(3) 연구비 사용	7
(4) 연구비 정산	9
 제2장 연구비 관련 상담 및 부당집행 사례	 11
1. 연구비 전반에 관련된 상담 및 부당집행 사례	13
(1) 연구비 관리의 원칙	13
(2) 연구비 관련 상담사례	16
(3) 연구비 부당집행사례	25
2. 연구비 비목·세목별 상담 및 부당집행 사례	29
(1) 인건비	29
(2) 학생인건비	35
(3) 연구장비·재료비	38
(4) 연구활동비	44
(5) 연구과제추진비	49
(6) 연구수당	56
(7) 위탁연구개발비	65
(8) 간접비	68
 제3장 2013년도 연구비 관련 규정 문의사항	 73
1. 2013년도 주요 개정내용	75
2. 개정내용 관련 상담사례	78
 [참고] R&D 도우미 센터 소개	 87

연구비 사용,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상담 및 부당집행 사례 중심-

제1장

연구개발비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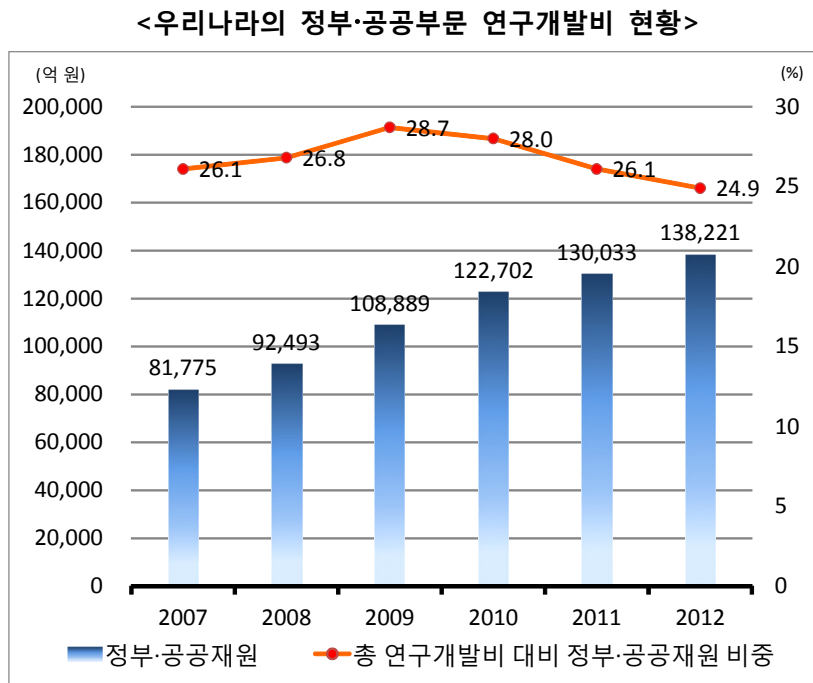


연구개발비 일반현황

제1장

1. 연구개발비 현황

- 우리나라 정부·공공부문의 연구개발비는 2007년 8.1조 원이었던 것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3.8조 원을 달성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공공재원의 비중은 2009년까지 증가하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 24.9%를 기록



※ 자료원: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2),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총 연구개발비(정부·공공재원, 민간재원, 외국재원)도 2007년 31.3조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는 최초로 50조 원을 넘어선 55.4조 원을 기록
 -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2007년 3.21%에서 2012년 4.36%로 지속증가

2. 연구개발비 관련 법령 및 규정 현황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법 률	과학기술기본법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미 래 부 부 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연구노트 지침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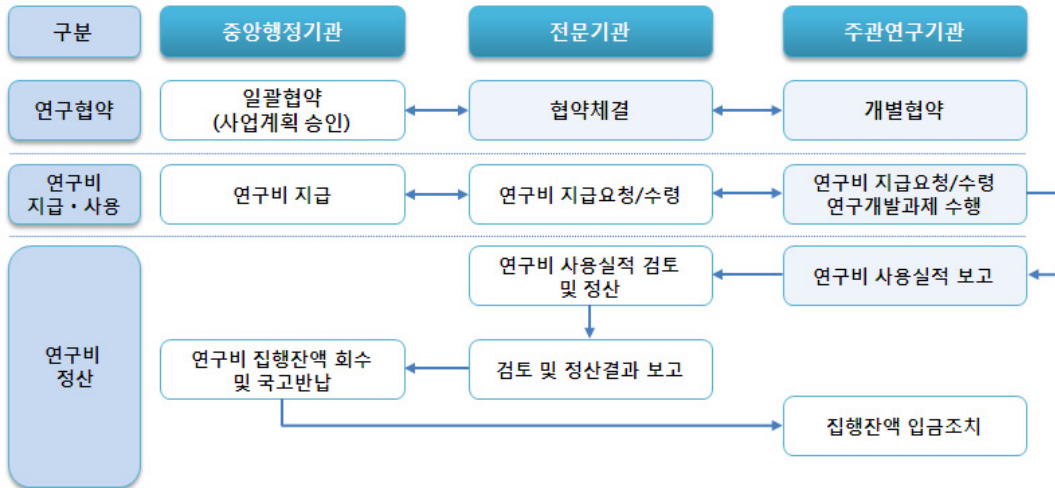
2 각 중앙행정기관 주요 세부규정 목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세부규정의 제정·운영)에 의거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 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 처	세 부 규 정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소관 재난안전관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사업운영규정」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3. 연구비 지급, 사용 및 정산

1 연구비 관리 절차 개요



2 연구비 지급

◆ 관련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연구비 출연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비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됨
 - 다만,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과제 및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는 예외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4]에 규정된 비율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여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구비 지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규모, 연구 착수시기 및 정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에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정산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연구비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 경우 대학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평가

3 ■ 연구비 사용

◆ 관련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연구비 사용절차

- 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함.
 - 이 경우 연구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계속과제는 해당 연도 계획서)상의 연구 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음

■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사항>

- ①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②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③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 ④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 출연금의 이자사용

- 연구개발에 재투자 및 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필요
 - 사용계획이 없는 이자 또는 협약기간 후 발생이자는 중앙행정기관에 반납
-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 연구비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
 -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해야 함
-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4 연구비 정산

◆ 관련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 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 첨부서류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같음
-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 기관의 장은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비를 정산
 - 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
-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연구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비의 10% 이내로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연구 과제추진비의 경우 정산을 면제

■ 연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처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회수 제외 금액>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 ② 연구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
- 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 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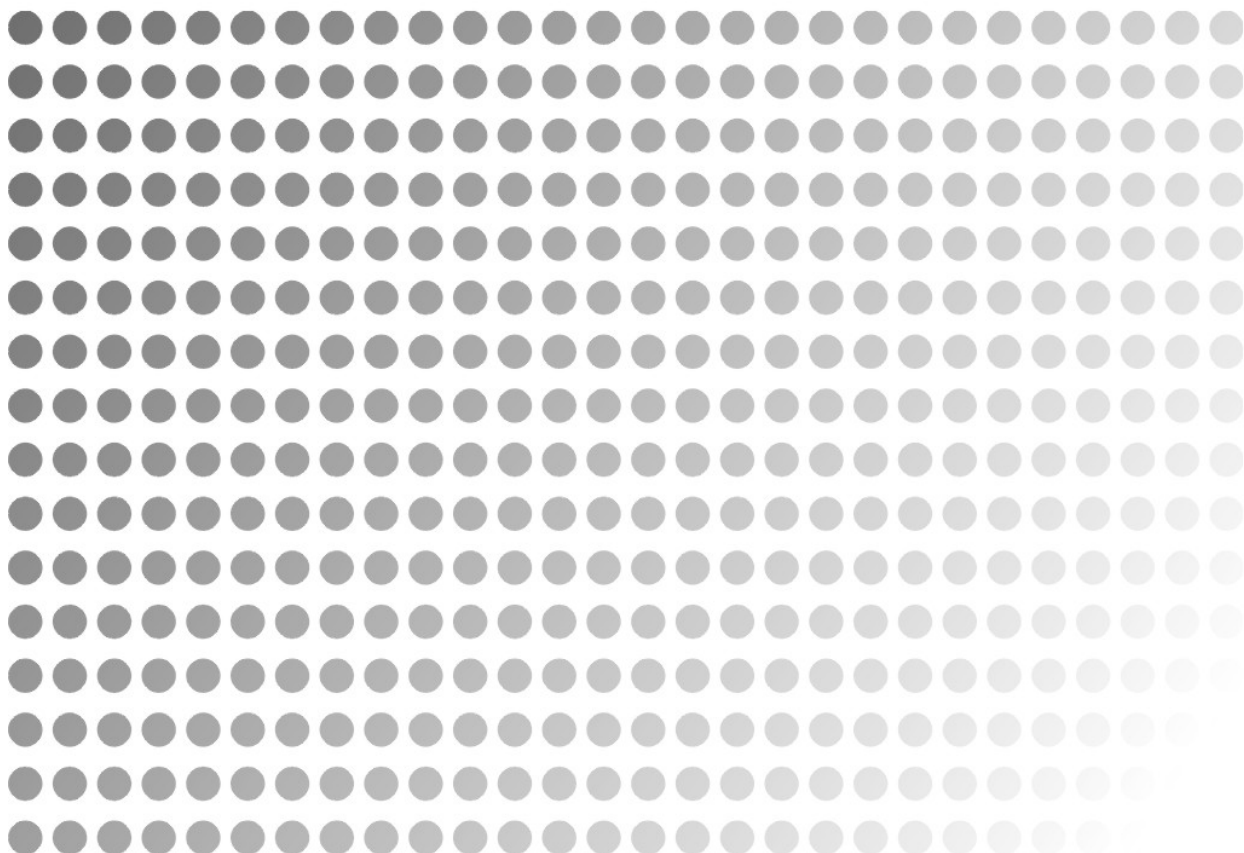
- 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부당 집행 금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

연구비 사용,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상담 및 부당집행 사례 중심-

제2장

연구비 관련
상담·부당집행 사례



상담 및 부담집행 사례

제2장

1. 연구비 사용 전반

1 연구비 관리의 원칙

<기본원칙>

-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당초 연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필요 연구비를 정확히 계상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
 - (증명자료의 객관성)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구비를 통해 증명
- ※ 증명자료는 당해과제 연구종료일로 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함

〈연구수행 단계별 연구비 관리 원칙〉

① 연구 시작 단계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자와 연구비로 구입한 자산의 관리자를 지정
- 연구비는 금융기관에 연구비계좌를 개설하여 예치
 - 수행연구과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타 자금과 분리된 연구비 통장계좌 개설 가능
- 연구비카드는 연구비계좌와 연결하고, 연구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 카드 관리대장 비치

② 연구 수행 단계

- 연구비 사용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구비 관리

구분	증명자료
지출 등 결의서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영수증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검수조서), 거래명세서
기타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등

* 연구비 카드로 집행된 경우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카드전표에 한하여 증명자료 생략 가능

- 연구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역을 연구비 비목을 구분하여 각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연구비 집행증명은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각 연구 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명
- 회계검증관련 부서장은 연구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연구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검사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 연구비 집행관련 증명서류는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

③ 연구 종료 단계

-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비사용실적을 보고(단, 산업통상자원부 RCMS사업은 2개월 이내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과제 정산시 필요에 따라 세부비목별 내역서, 증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필요시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검토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과제에 대하여 부담집행 금액을 해당 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확정된 부담집행 금액의 정부지분을 전문기관의 종합관리계좌에 반납토록 조치
-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사용 잔액·이자 및 정산잔액 반납 시 과제별, 기관별(연구책임자별) 반납내역을 구분하여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고, 반납 증명자료를 첨부

2 상담 사례

Q 연구개발비 세목 간 전용이 가능한가요?

A 연구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세목 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목 간 전용으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연구수당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히 [별표2의2]에서는 '연구수당 및 간접비의 증액'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수당

연구수당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 부담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담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담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 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 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Q 계속과제라면 연구개발비 이월이 가능한가요?

-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2제3항제2호 및 제19조4항제1호의 직접비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간접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후 이월이 가능합니다.
- 또한 제33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승인 없이 이월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 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에 대하여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Q 연구개발비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해당과제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하며, 타 연구개발 과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 지원, 활용역량 강화 등에 사용하고자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시) 기초연구사업, 협동연구개발사업, 학술지원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등(한국연구재단) :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타 과제 연구개발에 재투자
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부) : 비영리법인의 경우 적립하여 연구개발 재투자 사용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한국연구재단] 68~69쪽

1.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유형	사용방법
해당 연구과제에 산입·사용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당해연도 해당 연구과제에 산입·사용하며 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함 *직접비(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제외)에 한하여 사용가능함
연구개발 재투자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 보호 · 활용역량의 강화 등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집행 및 정산 매뉴얼, 구)지식경제부] 10쪽

9. 이자관리 및 수익금의 사용기준

-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개별과제의 사업비 원금에 산입하여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인 금액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함. 단, 비영리법인은 적립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1) 기초·기반기술 연구를 위한 재원 조성
 - 2)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 3) 지식재산권의 관리
 - 4) 과제수행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용도

Q 참여기업이 대기업일 때 기업부담금 중 현물의 부담방법 및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은 ①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②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입니다.

문의하신 대로 참여기업이 대기업일 경우는

- ① 인건비는 총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 ②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①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그 외는 재료비·시작품 제작 부품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Q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일 때 기업부담금 중 현물 부담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참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4]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아래 규정에서는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는 달리 현물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중소기업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달리 기업부담금의 현물 부분 구성에 자율성을 가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Q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잔액 중에 기업부담금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아래 규정 제19조제4항에서는 연구개발비 잔액 중 동 조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금액에서 '정부 출연금 지분'만큼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 출연금 지분만큼 회수된 후의 잔액은 '기업부담금' 부분에서의 잔액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잔액은 기업부담금을 부담한 참여기업으로 상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Q 연구비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연구개발비 집행 시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연구비카드'를 부득이하게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개발비의 관리는 '연구비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Q 연구개발비 집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A 부가가치세의 연구개발비로의 집행여부는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환급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제6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되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 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미래창조과학부] 11쪽

3. 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 시 제출 서류

가. 부당집행 공통기준

- 비목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당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음.

⑨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3 연구비 부담집행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 연구비 비목·세목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담집행기준

-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⑤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 ⑥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⑦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 ⑧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 ⑨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ex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집행**

○○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교수)에서는 “△△△△ 연구개발 사업단” (총사업비 30억 원, '12년도 6억 원)을 운영하며, ○○○과 위탁계약을 체결(1,000만 원 규모)하였다. ○○○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위탁사업기간 및 본 연구과제가 끝나는 시기까지 위탁사업비에 계상된 인건비(3명, 812만 원)를 포함하여 882만 원이 미집행된 상태였다.

정산 과정에서 미집행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연구원(3명) 인건비를 집행하고 계좌이체 내역서를 첨부하였으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연구기간 이후 집행된 882만 원을 부당집행액으로 판단하여 회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ex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주) □□는 2010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7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연차평가 결과 계속과제로 판단되어 2011년 연구비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주) □□는 2011년 7월 소속 연구원 전원 변경을 요청하고 7월 중순부터 8월초 사이에 원가계산서 제출 없이 시작품 제작, 기기구입 등에 대한 연구비를 집행하였다.

(주) □□ 소속 연구책임자는 2011년 7월 연구비 6,363만 원 상당을 시작품 제작비용 명목으로 입금하고 다음날 본인의 계좌로 6,300만 원을 돌려받아 소속 기관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비슷한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자재대금 납부, 공과금 납부 등 회사운영비에 총 2억 3,3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주) □□의 제재조치 평가단을 운영하여 (주) □□ 및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 4년을 부과하고 2차년도 연구비 전액을 환수조치 하였다.

ex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 ○○○○ 구축장비 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 △△△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5,0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부과정 연구원을 석사과정 연구원인 것처럼 꾸며 인건비 1,965만 원을 초과로 계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은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있는 “○○○○장비개발”과제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석사과정 학생을 박사과정인 것으로 꾸며 인건비 135만 원을 초과로 계상하였다.

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연구책임자에 참여제한 조치를 부과하였고, 부당하게 집행된 외부인건비 7,10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하였다.

ex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현물로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현물을 연구기간에만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액을 당해연도 감가상각비에 사용월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식회사 △△△는 “○○○○ ○○○○○○○○○ 구축 및 운용기술 개발”과제를 약 2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현물(컴퓨터 프로그램)의 취득원가인 3,05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해연도 감가상각비에 사용월수를 곱하여 산정할 경우 실제 현물부담액은 382만 원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연구기자재 등의 구입연도를 고려하지 않거나, 또는 구입연도가 오래되어 내용연수가 지났음에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현물부담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18개 과제에서 현물부담액을 1억 9,572만 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기관들의 현물부담액 산정기준을 해당 연구기자재의 내용연수 및 사용월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조치하였다.

2. 연구비 비목·세목별

1-1 (인건비)정의 및 계상기준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의 정의>

구분	정의
내부인건비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총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인건비의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총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참여율 계상 불가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 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 ①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③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 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 연구원까지 현금계상 인정(「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 제8항 제1호)
-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1-2

(인건비)상담 사례

Q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율을 0%로 하여 참여할 수 있나요?

A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0%라는 것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참여율을 0%로 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라 '해당 과제 참여율'은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자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기 확보된 기관 소속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Q 직종이 연구직인 연구자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으로 참여·기여 한다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계상 포함)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인력으로 참여한다면 간접비(지원인력인건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인건비 사용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1-3 (인건비)연구비 부담집행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인건비 부담집행 기준>

- 인건비 비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담집행기준
 -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③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내부인건비 비목에 **적용되는** 부담집행기준
 - ①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 외부인건비 비목에 **적용되는** 부담집행기준
 - ①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②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③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ex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대학교의 △△△교수는 자신이 연구책임자 및 수석연구원인 연구과제에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을 참여연구원 등으로 등록한 후,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및 여비 2억 9,679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내장학금 등 연구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6,306만 원까지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교수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억 5,985만 원 중 1억 8,711만 원 등을 2008년부터 3년간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차액은 외국인학생 식대 및 교통비, 연구과제 수주활동비, 연구기자재 구입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85만 원은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2,073만 원은 사용처를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부담집행 금액은 환수 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주고 △△△는 참여제한 조치를 하였다.

ex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A기관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참여연구원 중 1인의 내부인건비를 3,600만 원으로 계상(기준 월급여 1,000만 원, 참여기간 12개월, 참여율 30%)하고, 사용실적보고서에도 해당 금액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집행 증빙자료로 제출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의 월급여는 내부인건비 계상액인 1,000만 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기관은 문제가 된 참여연구원이 겸직 중인 ○○대학교의 근로계약서에 월급여가 1,500만 원으로 명시된 점을 고려하여 내부인건비를 책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규정에 따르면 과제를 수행하는 A기관이 아닌 타 기관과의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내부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중 계상한도를 초과한 금액인 1,211만 원을 불인정하였다.

ex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대학교의 감사결과 ○○○가 2010년 3월부터 9개월 동안 참여연구원 인건비 2,437만 원을 공동관리하여 그 중 2,168만 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잔액인 269만 원은 환수조치하였고, ○○○는 참여제한 3년을 부과하였다.

한편, ●●●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참여연구원 인건비 8,494만 원을 공동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비 잔액 3,964만 원을 환수조치 하고, 2011년 수행 중이던 과제에 대한 연구비 집행을 중지하는 한편 ●●●에 참여제한 3년을 부과하였다.

2-1 (학생인건비)정의 및 계상기준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박사후연구원 포함)
- **(계상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
 -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 기준
 - 학사이하 : 100만 원 ▪ 석사과정 : 180만 원
 - 박사과정 : 250만 원 ▪ 박사후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2-2 (학생인건비)상담 사례

Q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학생인건비 기준단가를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A 학생연구원의 학생인건비는 아래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석·박사 통합과정생'에 대한 금액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 대학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과정, 박사과정 각각의 금액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제2조(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Q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학생인건비에서 4대 보험 등의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박사후연구원은 다른 학생연구원들과는 달리 고용계약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4대 보험 등'의 비용은 해당 박사후연구원의 학생인건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2-3

(학생인건비)연구비 부담집행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학생인건비 부담집행 기준>

-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 ③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 ④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 ※ 2012년 7월 1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에는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연구원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계상

ex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서는 학사과정 학생연구원에게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 중 보조원(229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과다계상된 금액을 회수하였다.

ex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월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될 수 없다. 그러나 □□대학교에서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수행된 연구과제에서, 일부 학생연구원에게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1,525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 1,525만 원을 회수하였다.

3-1 (연구장비·재료비)정의 및 계상기준

- (정의)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제외)
 - 연구인프라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 (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협약 시 장비구입 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계상
 - ※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비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계정대체 가능)
 -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3-2

(연구장비·재료비)상담 사례

Q 연구장비는 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토록 하고 있는데, 해당 장비 구입비를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집행만 하면 되나요?

A 연구장비는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집행 뿐 만 아니라 입고 완료되어야 합니다.

동 내용은 연구장비·재료비로 구입한 장비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오니 이를 이해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3-3

(연구장비·재료비)연구비 부담집행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연구장비·재료비 부담집행 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②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③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 ④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 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
- ⑦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 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 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 ⑩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 ②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

※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PC 및 프린터 구입 허용 예정

- PC(노트북 제외), 프린터에 대해서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기관장이 정한 절차(예:연구장비심의회)에 따라 구매허용(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13.12.19)

ex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주)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부터 8,000만 원 규모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는데,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으며 관련 규정에도 적합하지 않은 사무실 임대·관리비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연구비를 집행하였다. □□□□□□(주)는 사무실 임대료 71만 원, 사무실 관리비 51만 원, 사무실 관리인력 인건비 151만 원 등을 집행하였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부당집행 된 연구비 총 487만 원을 회수하였다.

ex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연구원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억 4,000만 원 규모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연구기간 중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기자재(외장하드, USB 등)를 구입하는데 19만 원을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금액인 19만 원을 회수하였다.

**ex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주)□□□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3차년도 연구개발기간 중에 ◆◆◆◆◆◆◆◆로부터 6,000만 원에 “Fluidized Bed”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기는 2012년 6월 27일에 검수되어 연구개발과제 종료일(2012년 5월 31일) 이후인 2012년 7월 2일에 입고되었다. 따라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해당금액인 6,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ex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에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

A기관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에 중요한 장비이나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못하였던 “워터젯 추진기”의 구입을 위해 협약변경 승인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소관 전문관리기관은 승인요청이 정해진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을 들어 변경요청을 불허하였다. 그럼에도 A기관은 구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비의 구입액 1억 2,200만 원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위탁정산회계법인에 제출하였다.

위탁정산회계법인은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5,000만 원(2013년 규정 개정에 따라 기준액 3,000만 원으로 하향조정) 이상 장비가 승인 없이 구입되었기 때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해당금액 1억 2,200만 원을 회수하였다.

ex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주식회사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연구비 정산에서 협동연구기관이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의 재료를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소관 전문관리기관은 해당 건이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수행기관 상호간 거래였기 때문에 전액 회수하였다.

ex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대학교의 연구책임자 ○○○은 2011년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 소프트웨어인 Adobe Acrobat을 구입하였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 정산시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인 63만 원을 회수하였다.

4-1

(연구활동비)정의 및 계상기준

● 정의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부처별 연구활동비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부처	공통항목 외 추가항목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자유치 및 파견지원금
산업통상자원부	● 창의활동비(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중 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창작관련분야) ● 연구인력 활용비(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십,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중기청	●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

●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4-2

(연구활동비)상담 사례

Q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관련 분석을 공동연구기관에 맡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시험분석료를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는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 분석기관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전담)기관에서 사전 인정한 경우는 해당 금액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활동비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연구활동비 부담집행 기준>

-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4-3

(연구활동비)연구비 부담집행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연구활동비 부담집행 기준>

□ 국외 출장여비

- ①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 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 ②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③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④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 ⑤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①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 ② 당초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 전화요금 등
- ③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숙기료, 기술도입비 등
-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수행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 ②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③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 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④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 ⑤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⑥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⑦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 ⑧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 ⑨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ex (국외 출장여비)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대학교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은 ○○○은 2012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국외출장 기간이 1일 단축되었음에도 1일분에 해당하는 국외여비를 반납하지 않았고, 2013년 정산과정에서 해당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1일분에 해당하는 국외여비 49만 원을 회수하였다.

ex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원은 2012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적이 없는 연구원의 명함 제작비를 집행하였고, 2013년 정산과정에서 해당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명함제작비에 해당하는 1.2만 원을 회수하였다.

ex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별 수행기관 내에서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일부부처 제외). 그러나 주관연구기관인 A기관과 B기관은 참여연구기관 소속 직원에게 각각 1,700만 원, 500만 원을 전문가 활용비 및 멘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참여연구기관인 C기관은 내부직원에게 1,200만 원의 멘토비용을 지급하였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들은 동일 사업 내에서 각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과제가 ○○설비 관련 과제, ○○부품 관련 과제로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관 부처의 경우 단일과제의 수행기관 간(주관기관↔-참여기관, 참여기관↔참여기관) 거래뿐만 아니라 총괄·세부과제(세부과제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수행기간 간의 전문가 활용비 지급 등 거래를 불허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간 거래금액인 3,400만 원을 회수하였다.

5-1 (연구과제추진비)정의 및 계상기준

● 정의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국내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5-2 (연구과제추진비)상담 사례

Q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과 과제 관련 내부회의 시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였다면 불인정인가요?

A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은 부당집행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동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회의비를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때에는 부당집행 금액으로 판단하여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③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Q 연구개발과제 관련 회의 후 점심식사를 한 경우, 식대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회의 개최에 따라 발생하는 식대는 회의비로 처리가 가능하며, 회의비로 집행 시에는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을 증명자료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및 [별표2의2]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의 식대(야근 및 특근에 한함. 평일 점심 식대는 부담집행 금액으로 회수대상임)'로서 '회의와 관련한 식대'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별표2의2] 부담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1. 연구개발비 부담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담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 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Q 근거리(시내) 출장 시에도 관련 증명자료(영수증 등)를 구비해야 하나요?

A 아래 규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 시에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근거리(시내) 출장 등 증빙서류의 구비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출장품의서' 등을 증빙서류로 감안한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Q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인데, 해당자에게 여비를 지급해도 되나요?

A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자의 인건비 실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장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3

(연구과제추진비)연구비 부담집행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연구과제추진비 부담집행 기준>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 ③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①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 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③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 ①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②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 ③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 ④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소규모 회의 시 행정부담 완화** 예정

-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 지출시에는 증명자료(영수증) 만으로 집행이 가능토록 변경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13.12.19)

* 단, 10만 원 초과 시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제출 필요

ex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국립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는 (교육)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계상하지 않고 대학 자체 여비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출장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초과지급 된 출장여비를 전액 회수하였다.

ex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A기관은 광주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연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A기관 대표이사가 10회에 걸쳐 토요일 오후에 서울로 출장을 간 후 월요일 오전에 회사로 복귀하여 22~28만 원씩을 출장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A기관 측에서는 전시회 등의 참관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적절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출장시점에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전시회가 없었다. 이에 따라 소관 전문관리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대표이사가 업무상 목적이 아닌 수도권 소재 자택 방문에 출장비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 비용 273만 원을 불인정하였다.

ex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대학교에서는 2011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참여연구원이 국내출장 중 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2012년 정산과정에서 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회의비에서 식대를 이중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출장비 집행액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

ex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주식회사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7월부터 국내에서 결제한 연구비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기관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주점인 "○○"(서양음식점으로 등록)에서 술을 마시고 2008년 7월 21일 23시 경에 30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42건 5,545만 원 가량을 심야시간(23~5시) 주류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내부인원 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이 심야시간에 이용한 업소 및 주류와 관련된 상호를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 23시 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36건 1,718만 원 가량이 부당집행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부당집행한 연구비를 환수조치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규정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하였다.

ex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일부부처 제외)

중앙행정기관인 ○○○는 회의비 집행 시 회의록 및 외부인사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정산과정에서 2011년에 ○○○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대학교 등 6개 연구기관에서 내부직원 간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도 회의비를 집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금액인 380만 원을 회수하였다.

△△대학교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총 13차례에 걸쳐 내부직원 간 회의비로 216만 원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교에서 부당집행한 회의비 216만 원을 회수하였다.

6-1 (연구수당)정의 및 계상기준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
 -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1조)
 - ※ 중소기업청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 가능하도록 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

6-2

(연구수당)상담 사례

Q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었는데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수당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그 비율만큼 연구수당도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인건비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부담집행으로 회수대상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 부담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담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담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Q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뿐일 때, 해당 과제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가 단독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구수당 배분을 위해 참여연구원을 추가로 참여시켜야 하나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라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상되며, 동 규정 [별표2의2]에서는 계상된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참여연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

문의하신 대로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이란 해당 연구책임자 1인에 해당하는 연구수당만이 계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계상된 연구수당을 해당자에게 기여도 평가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연구개발 과제에 불필요한 인력을 임의로 참여시켜 연구수당을 배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수당

연구수당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 접 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Q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나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수당 지급 시 연구기관 차원에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수당 지급 시에는 동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인건비 감액에 비례하여 연구수당도 감액'되어야 하니, 참고하셔서 연구수당 지급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담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1. 연구개발비 부담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담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Q 연구기간 중간에 인건비를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인건비 대비 연구수당이 20%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게 되면, 부당집행으로 회수 대상 금액이 됩니다.

즉 당초 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수당의 인건비 대비 계상비율과는 관계없이, 원래계획에 비해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연구수당도 감액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인건비 규모 변경으로 인한 연구수당의 과다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오니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Q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중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에 변경된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도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래 규정 [별표2]에 따라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장려금' 형태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구수행 도중에 참여연구원의 변경으로 연구수행을 중간에 그만둔 연구원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객관적인 기여도가 인정되어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준한다면 연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부담집행 금액으로 회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수당

연구수당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별표2의2] 부담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비>연구수당

-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Q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는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A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장려금 성격의 금액인 바, 그 계상 및 지급 대상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모든 참여연구원'입니다.
따라서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 대상 역시 '모든 참여연구원'이어야 타당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연구수당

연구수당 사용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연구수당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비고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6-3 (연구수당)연구비 부담집행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연구수당 부담집행 기준>

-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 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 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실집행액 인건비의 20% 초과금액에 대해 불인정(「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제11조 제12항)
-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③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 책임자 1인 경우 제외)
-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 ⑤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ex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대학교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억 2,400만 원 규모의 “○○○○○○ ○○○ ○○○○ ○○ 개발”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연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원의 연구수당 명목으로 2회에 걸쳐 71만 원이 집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금액인 71만 원을 전액 회수하였다.

ex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대학교는 “□□□□□□□□인프라사업”을 수행하였는데, 4차년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9년 11월, 2010년 1월과 3월에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게 각각 1,500만 원, 660만 원을 지급하였고, 5차년도인 2010년 8월, 11월에 각각 560만 원, 3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0년 10월 참여연구원 3명에게 각각 4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연구수당을 책정한 기준 및 산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당집행 금액을 불인정하고,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ex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A기관은 B기관, C기관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으로 1억 8,500만 원 규모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3개 기관 중 참여연구기관은 B기관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참여연구원 3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현물인건비를 계상하였고, 현물인건비의 2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연구수당으로 계상하였다. 그런데 참여연구원이 2인 이상임에도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수당 300만 원 전액을 총괄책임자 1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수당 300만 원을 회수하였다.

7-1 (위탁연구개발비)정의 및 계상기준

- (정의)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계상기준)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용 인건비를 제외함. 단,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됨

7-2 (위탁연구개발비)상담 사례

Q 위탁연구개발비 산정 시의 '직접비'에는 현물이 포함되나요?

A 총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현물이라면 직접비에 포함됩니다.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범위에는 총 연구개발비에서 포함되지 않는 '미지급 인건비'는 제외되고, 총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현물은 포함됩니다. 참고로, 위탁연구개발비 계상은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위탁연구개발비가 총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규모로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Q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위탁연구개발비를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위탁연구개발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20%이상 증액이 가능하나요?

A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위탁연구개발비의 최대한도를 모두 계상하였다면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탁연구개발비가 총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기 위함이니 취지를 이해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7-3

(위탁연구개발비)연구비 부당집행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위탁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 ①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 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8-1 (간접비)정의 및 계상기준

- **(정의)**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
- **(계상기준)** 직접비(미지급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참고

〈간접비 계상기준〉

기관구분	간접비	비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 17% 이내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직접비 × 10% 이내	
영리법인**	직접비 × 5% 이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8-2 (간접비)상담 사례

Q 간접비의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가요?

A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간접비**

간접비 사용용도: 2. 연구지원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 ① 대학·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Q 간접비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에서 인건비성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인건비성 비용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접비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기관 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통신비 및 기타 소속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 관리성 경비'를 의미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간접비 사용용도: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Q 간접비 중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의 '실험실 운영 지원비'로는 어떤 항목이 집행 가능한가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는 기본적인 실험실 운영비로서, 주요 항목은 '시약 및 재료 구입, 수용비 및 수수료, 비품 구입경비 등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간접비 사용용도: 2. 연구지원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3

(간접비)연구비 부담집행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간접비 부담집행 기준>

-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 ③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 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영리기관이 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초과집행금액은 예외로 함(「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ex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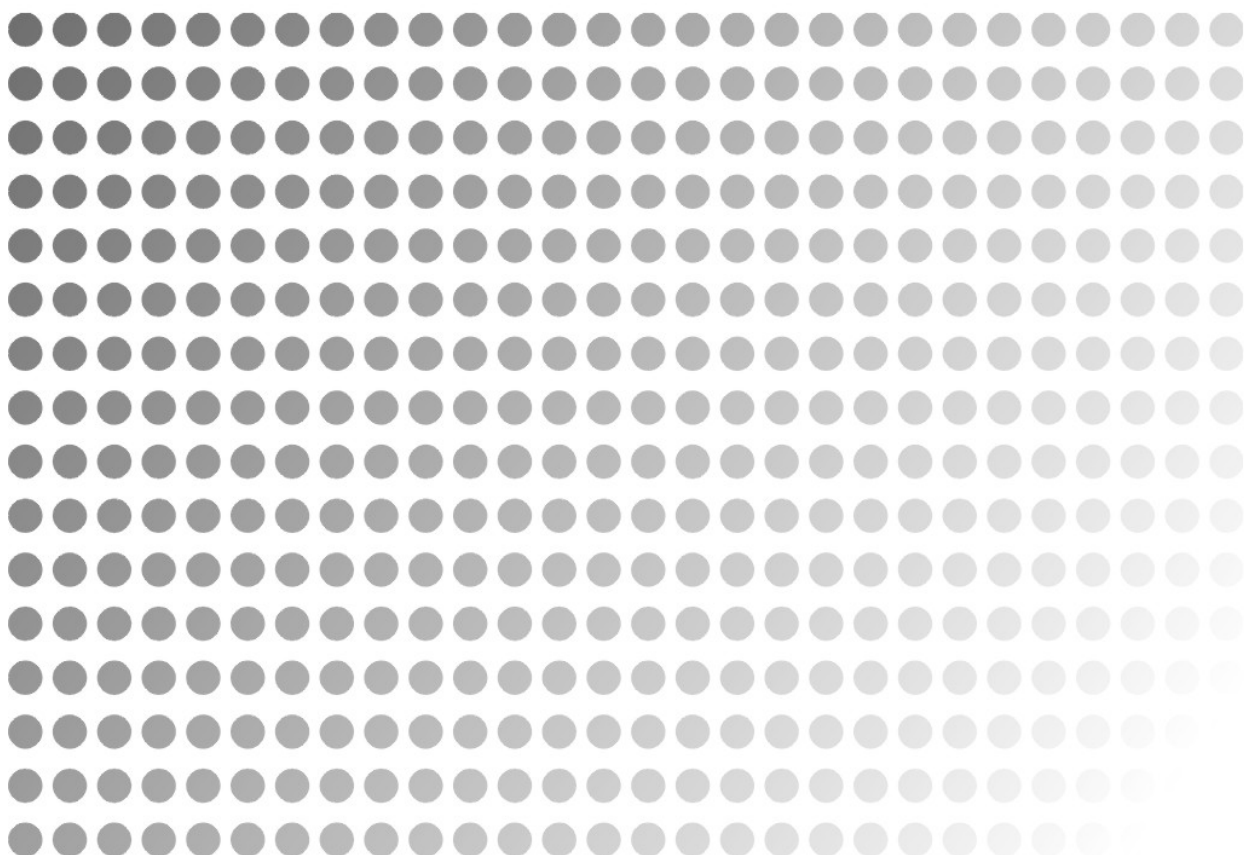
연구비 정산과정에서 K기관이 연구계획서 상에 계상된 간접비를 증액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회수 통보를 하였으나, K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전에 정확한 간접비용을 산출할 수 없고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2의2] 부담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8항 관련)에 따르면 간접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이상으로 증액하여 사용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다. 이에 따라 초과사용분을 K기관으로부터 회수조치 하였다.

연구비 사용,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상담 및 부당집행 사례 중심-

제3장

2013년도 연구비 관련
규정 문의사항



연구비 관련 규정 문의사항

제3장

1. 2013년도 주요 개정 내용

1 2013.2.22. 주요 개정 내용

-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2013.2.22. 개정)
 -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연구수행기관의 자체 기준 적용 범위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 (직접비의 연구과제추진비 계상기준) 연구과제추진비 계상 시 연구수행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8항 관련)
(2013.2.22. 개정)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 제1호 가목) 연구기간 중 정상적으로 집행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연구장비·재료비는 회수할 수 있도록 기준 강화

개정 전	개정 후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와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학생인건비 변경 관련 전문기관 승인사항 확대
(2013.2.22.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2 2013.9.26. 주요 개정 내용

-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제3항 학생인건비 계상액을 소폭 변경 시
전문기관 승인을 면제 (2013.9.26.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5. 학생인건비를 <u>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u>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5. 학생인건비를 <u>원래계획보다 5 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u>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2013.9.26. 개정)
- (직접비 중 인건비 계상기준 제2호) 정출(연)이나 특정(연)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서 참여율이 확보되었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참여율을 계상할 수 없도록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2. ----- ----- ----- ----.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u>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u>	2. ----- ----- ----- ---.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u>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u>

- (간접비 사용 용도 중 제3호 나목) 국내·외 표준 등록 등에 필요한 경비도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3. 성과활용지원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u>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u>,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u>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u>, <u>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u>,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간접비 계상 기준 중 제5호)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용도로 집행할 수 있는 간접비 비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u>5퍼센트</u>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u>10퍼센트</u>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8항 관련)
(2013.9.26. 개정)

- (제1호 가목) 연구기간 중 정상적으로 사용된 인건비의 경우 회수하지 않도록 회수기준 완화

개정 전	개정 후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와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의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기준) 국내 출장여비에서 영수증 미첨부에 따른 부당집행기준을 연구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한 실비의 경우로 명확화

개정 전	개정 후
1) 국내 출장여비: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3 2013년도 개정사유 (법제처 제공)

- (2013.2.22. 개정)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문적 발전이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창출 등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관한 감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013.3.23. 개정)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713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013.9.26. 개정) 연구개발결과물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사업·창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부담 경감을 통하여 연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관련 상담사례

Q 우리 기관에서는 인건비를 익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인건비는 연구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 달에 지급되게 되는데, 해당 인건비는 불인정인가요?

A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부담집행 금액으로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에 '인건비'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09.26자 현행 규정에서는 '인건비' 부분도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되었다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2013.09.26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는 해당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 부담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담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부칙

제9조(부담집행 금액의 회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표 2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Q 참여연구원들의 국내 출장여비 관련하여 연구기관 내부 여비규정에 의거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영수증' 중 하나를 무조건 구비해야 하나요?

A 기존 규정(2012.05.14. 개정(2012.07.01. 시행))에서는 연구개발비에서 국내 출장여비를 사용하는 경우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영수증 중 하나를 구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기관에서는 '정액'으로 국내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우 증명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를 감안하여 현행 규정이 시행된 2013.09.26.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는 '실비'로 국내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우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영수증 중 하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부칙

제9조(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표 2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Q 기존에 (구)학생인건비 폴링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2013.07.01자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2013.03에 신규로 시작한 과제가 있는데, 해당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감액하게 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2013.02.22이후부터는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3.03 신규 공고하여 협약한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현행 규정(2013.09.26.)에서는 '학생인건비를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2.5.14.]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개정 2013.2.22>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만 해당한다) <개정 2013.2.22., 2013.9.26>

부칙 <대통령령 제24396호, 2013.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64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Q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간접비에서 해당 비용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비용은 현행 규정 상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의 범위에서 기술지주회사 설립 후 '최장 5년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비

간접비 사용용도: 3. 성과활용지원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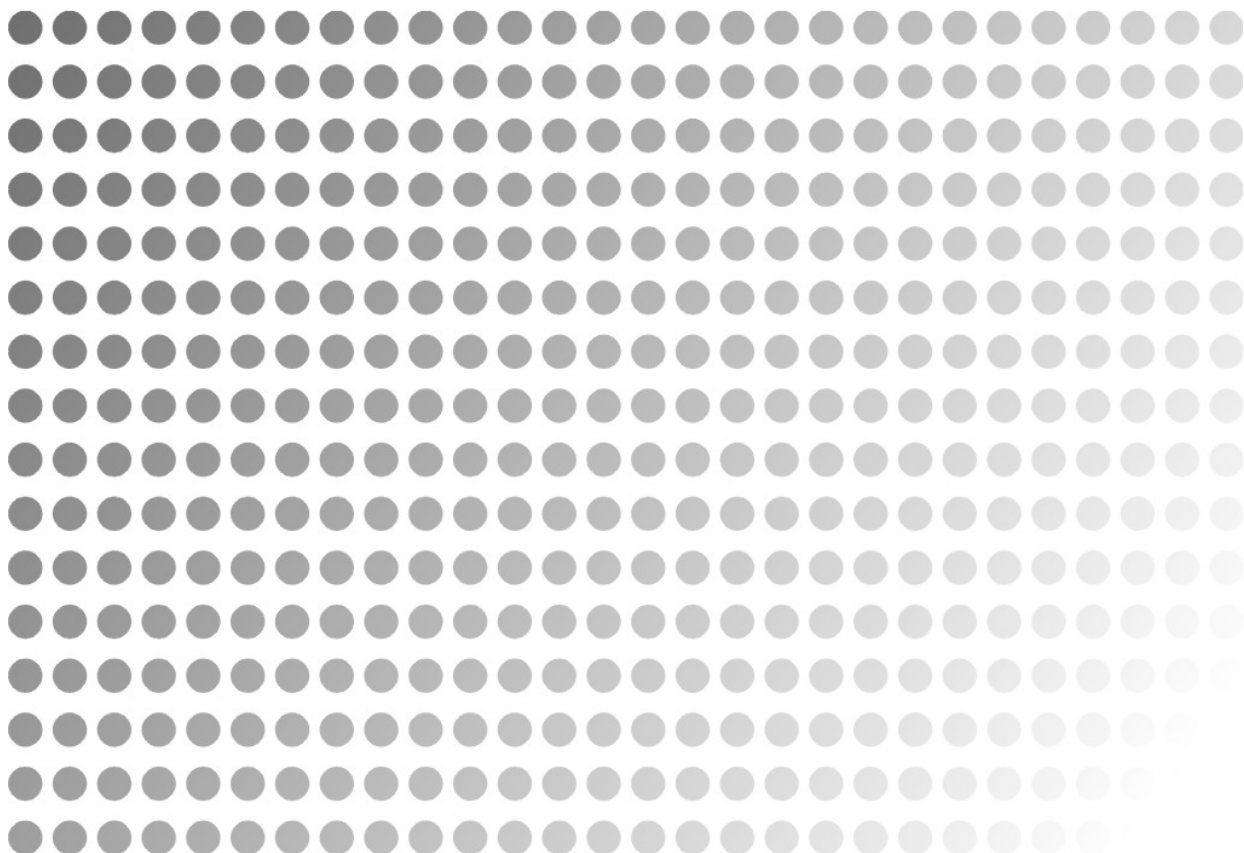
간접비 계상기준: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연구비 사용,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상담 및 부당집행 사례 중심-

참고

**R&D도우미센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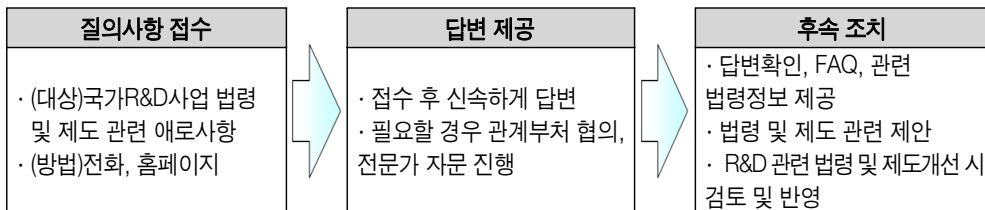


R&D도우미센터 소개

참고

- R&D도우미센터는 국가R&D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법령과 제도에 관련된 의문 사항에 대한 답변의 상시적인 제공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 2009년 4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R&D도우미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상담 및 의견수렴을 전화상담(1800-7109)과 온라인상담(www.rndcall.go.kr)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처리 절차〉



- 동 센터의 답변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오니, 이에 유의하시어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의 내용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R&D 도우미센터 홈페이지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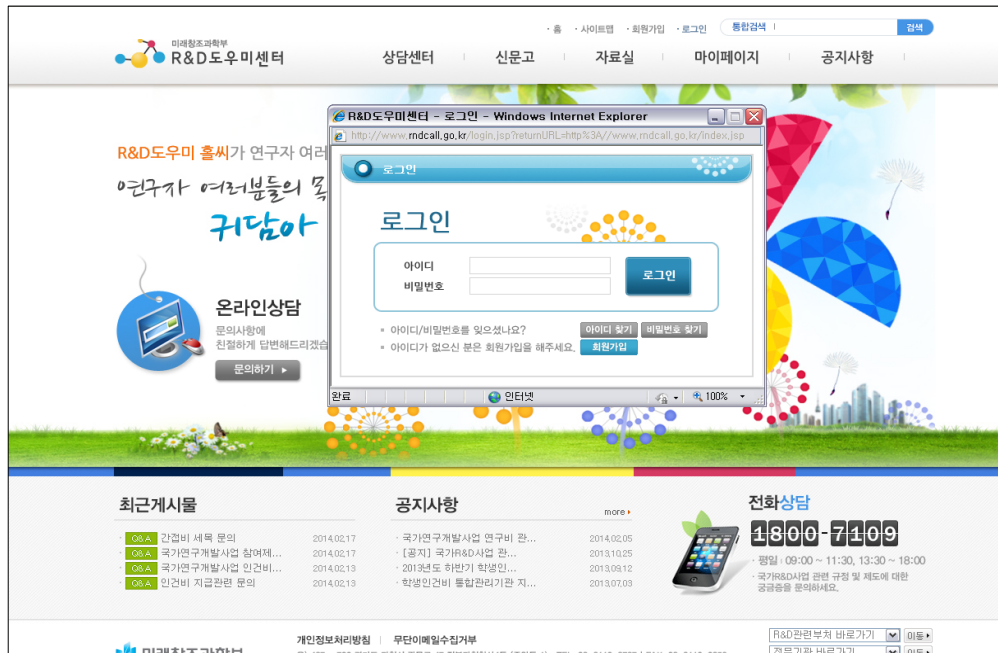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처음 방문하시는 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Click
- 재방문하시는 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Click



- 각 항목 입력(체크표시는 필수입력항목) 후 저장 Click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문의하기 및 답변확인

- 로그인 후 '문의하기' Click



- 문의내용 등 입력 후 ‘문의하기’ Click

(SMS, E-mail 수신에 체크하시면 답변 등록 후 알림서비스 가능)

R&D도우마센터 상담센터입니다.

온라인상담 R&D 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담당자가 답변해 드립니다.

※ SMS 또는 E-mail 수신 시, 답변이 등록되면 입력하신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알림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MS ☐ 수신 ☐ 미수신

E-MAIL ☐ 수신 ☐ 미수신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제목

질문내용

첨부파일

- 문의의 진행상태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R&D도우마센터 마이페이지입니다.

문의하기 전체: 1건 처리중: 1건 완료: 0건

제안하기 전체: 0건 처리중: 0건 완료: 0건

스크랩현황 건수: 0건

번호	구분	분류	제목	등록일	처리일	진행상태
1	문의		테스트	2014.02.05		처리중

개인정보처리방침 | 무단이메일수신거부

R&D 관련부처 바로가기 | 이동

- 답변 완료 후에는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번호	구분	분류	제목	등록일	처리일	전황상태
1	문의	기타(일반)	테스트	2014.02.05	2014.02.05	완료

연구비 사용,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상담 및 부당집행 사례 중심 -

| 발 행 | 2014년 3월

| 발행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제도실

|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R&D도우미센터

[TEL : 1800-7109, WEB : www.rndcall.go.kr]

연구비 사용,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상담 및 부당집행 사례중심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한
궁금증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1800-7109(친한연구)
www.rndcall.go.kr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